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26호

2020.11.24.(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0-495호	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고시	2
제2020-496호	사회적 거리두기 격상(2단계)에 따른 특수판매업체(다단계·후원방문· 방문판매) 방역조치 고시	4
제2020-497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고시	6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95호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)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서울특별시 장

1. 기 간 : 2020년 11월 24일(화) 0시 ~ 12월 7일(월) 24시
2. 고시대상 :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 서울시내 모든 종교시설)
3. 고시내용 :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 강력 권고 ■ 정규예배·미사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총별,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* 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의 20% 이내 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도 금지)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신도회 모임, 성가대(합창단) 연습 모임 등 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(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■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 강력 권고 ■ 정규예배·미사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총별,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* 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 원의 20% 이내 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* 금지 (숙박행사도 금지)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신도회 모임, 성가대(합창단) 연습 모 임 등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 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공용물품(성경, 찬송가책 등) 사용 금지 ■ 통성기도, 찬송, 찬불(합창) 자제	■ 공용물품(성경, 찬송가책 등) 사용 금지 ■ 통성기도, 찬송, 찬불(합창) 자제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-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(제80조), 관리자 · 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83조) 부과
-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,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
5. 법적근거(처분근거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」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」 등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0년 11월 24일 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- 담당자 :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(02-2133-2522)
- 담당자 :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(02-2133-2532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96호

**사회적 거리두기 격상(2단계)에 따른 특수판매업체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)
방역조치 고시**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(2020.11.24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 제1항 제2호,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판매업체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)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서울특별시

1. 집합제한 전환 개요

- 대 상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
집합·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' 20년 11월 24일(화) 0시 ~ ' 20년 12월 7일(월) 24시
-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(발열체크 등) ■ 사업주·종사자·이용자 마스크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 비치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■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 내 상시비치 ■ 자연환기(창문 개방 등)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■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(구체화) - 시설 종사자·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-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■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최대 10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다과,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, 노래, 구호 금지 (구체화) ■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(신설) ■ 21시 이후 운영중단(신설)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■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최대 10명) ■ 다과,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, 노래, 구호 금지 (구체화) ■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(신설) ■ 21시 이후 운영중단(신설)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~4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부과사유 :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(코로나19 등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의무부과

다.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라. 부과대상 :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(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)

마. 부과금액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(1차), 300만원(2차) 부과
-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바. 효력발생일 :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

사. 불복절차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.

○ 고발조치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97호
**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
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고시**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(2020.11.24.)과 관련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서울특별시

1. 기 간 : ' 20년 11월 24일 (화) 00시 ~ ' 20년 12월 7일(월) 24시

2. 대 상

○ 서울시 소재 실내체육시설

3.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○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 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‘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〈 서울시 추가 〉 ▶ 샤워실 운영 중단 (수영장 제외) ▶ 무도장 집합금지 ▶ 인원제한 (이용자간 2m거리 유지) ▶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	〈 서울시 추가 〉 ▶ 샤워실 이용 금지 (수영장 제외)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4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(10만원)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(기본2주) 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(12.30.시행)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년 11월 24일 0시 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(☎ 02-2133-2733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